

'23년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운영위원회(1차) 회의록

○ 주요 논의사항 및 결과

| 구분 | 검토내용 | 결과 | 위원회 검토사항 요약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|
| 안전1 | '23년 평가 계획 및 방법 | 원안 동의 | ① '23년 평가 계획 및 방법(일정 등) ☞ 원안동의(일정 등) ·평가자 워크숍 및 기관 설명회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(워크숍: 2. 22. ~ 24. / 설명회: 2. 27. ~ 28.) ② 설명회 개최 방법 ☞ 원안동의(대면 실시) ·교육기관 분포 및 이동 거리 고려해 서울 및 대전 등으로 이원화해 실시 |
| 안전2 | 코로나-19 관련 결속 | 원안 동의 | ①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☞ 원안동의 ·B.1.3.1, B.1.4 등 2개 지표 결속 ② 직무교육기관 ☞ 원안동의 ·A.2.3, B.1.1.1, B.1.1.2, B.1.3.1, B.1.4, B.1.7.1, B.1.7.2 등 7개 지표 결속 ※ 코로나-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(10판)에 따른 (평가시 불이익 금지) 안전보건공단은 기관 평가 시 코로나-19로 인한 「감염병 재난」 상황을 고려하여 직무교육 취소나 연기 등의 사유로 직무교육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|
| 안전3 | '23년 평가 항목 개선 | 원안 동의 | ① 공통 평가 기준 개선안(근로자/직무, 6개 지표) ☞ (A.1.1)연간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: 원안동의 ·평가 기준 명확화(직군별 교육 대상 분류) - 사무직, 사무직 외 ☞ (A.2.1)법정 필수 인력 정규직화 노력: 원안동의 ·강사가 중도 퇴직하고 신규 채용된 경우 기준 정립 - 근무 개월 수로 환산해 전수 적용 ☞ (A.2.4.1)외부 전문화교육 이수율: 원안동의 ·30% 미만에 대한 배점 기준 신설(배점 구간 조정) ☞ (A.2.4.2)강사의 전문성 향상 활동 실행: 원안동의 ·30% 미만에 대한 배점 기준 신설(배점 구간 조정) ☞ (B.1.3.3)자체 제작 VR 콘텐츠 보유: 원안동의 ·지표 삭제 |

| 구분 | 검토내용 | 결과 | 위원회 검토사항 요약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|-------|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|---|-------|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|---|-----|---|
| 안전3 (계속) | '23년 평가 항목 개선 | 원안 동의 | ☞ (B.4.1)자체평가 실시의 적정성: 원안동의 ·평가 기준 명확화(산식 보완 및 평가 기준 등) $\frac{\text{설문조사 결과 수}^*}{\text{평가대상기간 총 교육 수료자 수}} \times 100(\%)$ - (산식) *설문조사 결과 수: 설문조사 응한 교육 수료자 수 (분석)설문 취합 등만 실시하고 구체적 분석 미실시한 경우 한 단계 하향 평가 ②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기준 개선안(1개 지표) ☞ (A.3.2.1)실습용 장비 보유: 원안동의 ·점수 구간 조정 - 5점 배점 추가 및 배점 구간 조정 <table border="1" style="display: inline-table; margin-right: 20px;"> <tr><td>8종 이상</td><td>40</td></tr> <tr><td>5종 이상 8종 미만</td><td>30</td></tr> <tr><td>3종 이상 5종 미만</td><td>10</td></tr> <tr><td>3종 미만</td><td>0</td></tr> </table> 개선 ▶ <table border="1" style="display: inline-table;"> <tr><td>8종 이상</td><td>40</td></tr> <tr><td>5종 이상 8종 미만</td><td>30</td></tr> <tr><td>3종 이상 5종 미만</td><td>10</td></tr> <tr><td>1종 이상 3종 미만</td><td>5</td></tr> <tr><td>미보유</td><td>0</td></tr> </table> - 검전기 보유 여부(1종만 보유하더라도 보유 인정) ③ 직무교육기관 평가 기준 개선안(1개 지표) ☞ (A.3.2)실습용 장비 보유: 원안동의 ·평가 기준 명확화(장비 중복 보유 관련) - 지정 분야가 2개 이상일 경우, 중복되는 장비 인정해 점수 부여(단, 직무교육기관 전용 장비일 것) ※ '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. 직무교육기관의 인력·시설 및 장비 기준(교육 대상별로 보유해야 할 장비 중 중복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)'에 따라 중복 장비 인정 | 8종 이상 | 40 | 5종 이상 8종 미만 | 30 | 3종 이상 5종 미만 | 10 | 3종 미만 | 0 | 8종 이상 | 40 | 5종 이상 8종 미만 | 30 | 3종 이상 5종 미만 | 10 | 1종 이상 3종 미만 | 5 | 미보유 | 0 |
| 8종 이상 | 4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5종 이상 8종 미만 | 3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종 이상 5종 미만 | 1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종 미만 | 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8종 이상 | 4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5종 이상 8종 미만 | 3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종 이상 5종 미만 | 1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1종 이상 3종 미만 | 5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미보유 | 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안전4 | 기타 세부 사항 | 원안 동의 | ① 결속 항목에 따른 보정 방법 ☞ 원안동의 ·결속 지표 제외한 총점을 1,000점 만점 기준 환산 보정* *'22년 평가 방식과 동일 ② 온라인교육기관의 집체교육기관 인정 비율 검토 ☞ 원안(1안)동의 ·연간 144시간 이상 집체교육을 실시하였을 시 집체교육기관 평가지표에 준해 평가 실시 ('24년 개편 평가지표 적용안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